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5. 10. 20.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0월 7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5.10.1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5. 7. 1)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 내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보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수정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구성 : 위원장(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기능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 체계 구축·운영 등
-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 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민간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상위법령이 2015. 7.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 등을 근거로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총 21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
  - 1)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 기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복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였음.
  -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으로 사회보장 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및 사회복지법인이사의 추천사항 등

이 추가되고 구성위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함.

3) 실무협의체의 참여 범위가 보건, 복지에서 보건, 복지, 교육, 고용, 주거로 영역을 확대하고 구성위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함.

4)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가하고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실무분과 설치 규정을 마련함.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여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지역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하였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본 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동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적·물적·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신속한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내실화하고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88 호
----------	--------

제출연월일 : 2015.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5. 7. 1)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 내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보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
- 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수정
- 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구성 : 위원장(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기능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 체계 구축·운영 등
- 라.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용어변경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1) 규제심사 : 심사실시(대상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있음)

- 안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 위촉해제 요건에 품위손상, 청렴성 훼손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도록 개선 의견이 있었음(의견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 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5. 9. 03 ~ 9. 23,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복지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전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전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



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는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해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 및 품위손상, 청렴성 훼손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